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185
------	------

2024. 12. 20.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년 10월 16일, 김기덕 의원(찬성자 14명)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18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】

-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12.19.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 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기덕 의원)

1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국기(國技)인 태권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,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.

- 이에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,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해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사용 조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9조)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국기인 태권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에서,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을 지원하고자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나. 법적근거

- 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법 제8조(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)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인 우수 태권도 선수와 팀에 대한

시립체육시설의 사용 지원 관련 사무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 상 자치사무의 하나인 ‘체육의 진흥’과 관련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됨.

- 따라서 국기 태권도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로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 입법체계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<「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」>

제8조(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다.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(안 제9조)

- 안 제9조는 시립체육시설의 사용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안 제6조(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)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선수·팀과 안 제8조(표창)을 근거로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·팀,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규정함.

<「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」>

제6조(학교 태권도 교육의 진흥)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우수 태권도 선수의 조기 발굴·육성과 학교 태권도 활성화 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표창) 시장은 태권도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

단체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- 2021년 9월 동 조례안이 시행된 이래 학교 태권도 교육 진흥이나 표창을 근거로 지원대상이 되는 선수·팀과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팀은 극히 한정적인 바, 시립체육시설의 사용 지원대상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또한 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은 행정적 지원, 사용료·이용료의 면제·감면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, 그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선언적·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바, 시설 사용료 면제·감면 지원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임.

<조례 시행이후 적용 사례>

구분	적용 사례
1.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을 받은 선수·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소년체전 서울시 대표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등부 1팀(남/여) 15명, 중등부 1팀(남/여) 19명 •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부 1팀(남/여) 18명
2. 제8조에 의해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·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울시 체육인의 밤 체육유공자 표창 (24년 - 중학교 태권도부 코치 1명)
3.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국소년체전 서울시 대표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등부 1팀(남/여) 15명, 중등부 1팀(남/여) 19명 •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등부 1팀(남/여) 18명, 대학부 1팀(남/여) 18명, 일반부 1팀(남/여) 12명 • 전국생활대축전 서울시 대표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부 1팀 (남/여) 21명

- 따라서 조례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원대상의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방법이 추상적인 바, 향후 구체적으로 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10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18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10월 16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김 경, 김경훈,
김영철, 김형재, 남창진,
문성호, 민병주, 박철성,
유만희, 이용균, 이원형,
한 신, 홍국표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대한민국의 국기(國技)인 태권도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,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
- 이에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,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시립체육시설 사용 조항 및 체육시설 사용 협조 규정의 근거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태권도 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민체육진흥법」,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시립체육시설 사용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나 팀의 태권도 훈련을 위해 시립체육시설(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)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제6조에 따라 시장의 지원을 받은 선수·팀
2. 제8조에 의해 표창을 받은 우수 선수·팀
3. 서울특별시 내 단체에 가맹되어 활동 중인 태권도 대표 팀
4. 그밖에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제9조(시립체육시설 사용)	△	시립체육시설 사용 지원에 따른 세입감소 여지가 있으나 관련부서 확인결과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동 개정안 제9조(시립체육시설 사용)에 따라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에 의한 세입감소의 여지1)가 있으나, 서울시 관련부서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 확인결과 지원대상, 지원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요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또한 시설사용료 면제·감면 특성상 사용대상자 수 및 사용빈도2)에 따라 감소되는 세외수입이 달라져 본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사례를 준용한 자체적 추계 또한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☎ 02-2180-7954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시설사용 지원은 해석상 행정적 지원, 면제·감면 지원 등으로 나뉠 수 있으며 서울시립체육시설 무료사용 또는 사용료 감면을 전제하는 경우 세입감소 발생의 여지가 있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
2) 태권도 종목 특성상 자체 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점을 고려할 시 서울시립체육시설 사용빈도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
⇒ 따라서 현 시점에서 **평균적인 사용빈도**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